내화도료 불공정행위 "철퇴"

한두실렉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허위·과장광고 경고조치

최근 고부가도료로 각광받고 있는 내화도료 시장이 불공정거래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장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문제가 94년 건축법의 내화규정중 공장건축물에 한해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규모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 내화도료 시장점유현황(199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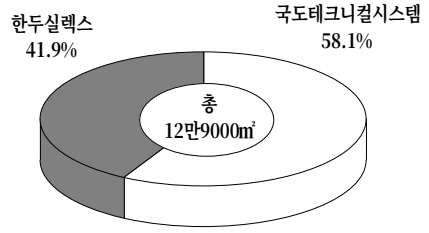

자료> CRI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기준 58.1%로 국내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테크니컬시스템은 시장점유율 41.9%의 한두실렉스를 상대로 95년 9월20일「부당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의 건」이라는 내용을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두실렉스가 종전 기술제휴(89~91년) 기업인 Flame Control(FCC)의 유명도를 이용해 상표를 불법사용, 표시 광고함으로서 소비자를 기만, 부당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방청도료의 경우 FC3004, 내화도료 FC173, TOP-CDAT FC8500 등을 들고 있다.

이와함께 국도테크니컬시스템은 한두실렉스가 현재 기술제휴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술제휴관계인 것처럼 속여 FCC의 상품소개서의 표기를 도용했으며, 3년계약후 이미 기술제휴관계가 무산됐는데도 이제품의 사본을 이용,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또 한두실렉스가 공사실적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FCC의 공사실적까지 포함시켜 제품의 사용실적을 도용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용기 등에 외국문자 및 외국어 등만을 표시함으로써 그 표시내용으로 보아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식별이 곤란,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제소내용을 근거로 사실조사에 착수,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케하는 등 제소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95년 12월29일 국도테크니컬시스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기업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은 관련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6항에 해당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경고조치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로 까지 비화된 국내 내화도료시장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국내기업이 시장점유에 급급한 나머지 기술제휴관계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수입품 선호를 의식, 해당기업의 상품표기를 도용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국내 내화도료 시장질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국산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내 페인트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6/2/5>